「안산시 색채경관계획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2345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○ 색채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생활의 안전 및 쾌적함과 관련된 심리적 지표며 사회성을 내포하나 이에 대한 색채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.

○ 따라서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수립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통해 안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높은 도시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.

○ 「경관법」 제10조에 의거 안산시 색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사 업 개 요

○ 용역기간 : 2012. 3월 ~ 2013. 1월

○ 사 업 비 : 78,474천원

○ 과업의 목적

- 안산시의 대표적 경관색채 추출을 통한 안산시 정체성 확립
- 현장 적용 가능한 색채경관계획(가이드라인 수립)
- 기본경관계획 등 기타 관련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및 경관 관리지침으로 활용
-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인/허가 및 안산시 경관위원회 등 각종 심의/자문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
- 도시환경색채의 체계화로 도시경관향상 및 도시경쟁력 확보

3. 주요내용

가. 공간적 범위

1) 구간 - 안산시 전역

2) 면적 - 424.862㎢ (안산시 기본경관계획구역, 도시기본계획구역)

나. 내용적 범위

1) 안산시 색채경관기본구상 및 경관색채기본계획, 경관색채가이드라인 수립

2) 안산색 찾기

- 시 경관색채 현황조사및 분석/국내외 사례조사/설문조사/시사점 도출등

3) 안산색 개발

- 안산색채 컨셉설정/ 친화색 설정 28색/ 문화색 설정 30색/ 상징색 설정6색

4) 유형별, 권역별 경관색채 지침서 개발

5) 안산시 컬러칩 표준화 및 활용방안 등

4. 주요추진사항

○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수립용역 사업 공고	: 2012.1.27.~2.7
○ 계 약	: 2012. 3. 16
○ 착수보고회	: 2012. 3. 29.
○ 색채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	: 2012.5.16.~6.15.
○ 안산시 경관위원회(1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)	: 2012. 6. 19.
○ 색채관련전문가 설문조사(경관위원회/건축위원회)	: 2011.8.14.~8.17.
○ 안산시 경관위원회(2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)	: 2012. 9. 11.
○ 주민공청회 개최	: 2012.10. 10.

5. 향 후 계 획

○ 시의회 의견청취	: 2012. 11월
○ 안산시 경관위원회 심의	: 2012. 12월
○ 최종보고회 및 사업완료	: 2012. 12월
○ 색채경관계획 승인신청(안산시→경기도)	: 2013. 1월
○ 색채경관계획 승인(경기도 지사)	: 2013. 2월

6. 검토의견

○ 색채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생활의 안전 및 쾌적함과 관련된 물리적, 심리적 지표며 사회성을 내포하나 안산시는 이에 대한 색채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.

○ 이에 따라 『안산시 색채경관계획』은 공공색채의 정립 및 도시환경색채를 체계적 수립으로 공공공간, 공공가로시설물 등 가로환경개선에 적용되어 우리시의 품격높은 도시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확보가 될것으로 기대.

○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수립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통해 안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높은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협조.

4. 관계법령 발췌내용

○ 「경관법」 제10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·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·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※ 붙임 : 안산시 색책경관계획수립(안) 1부.